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93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시사편찬위원의 임기 및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안 제3조제1항)
- 나.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종신연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 다.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임무)”를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사편찬을 위하여”를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수행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업무담당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임기종료전에 해촉된”을 “임기종료 전에 위촉 해제된”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으로, “이하같다)중”을 “이하같다) 중”으로, “기록물에 대하여”를 “기록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하고자”를 “폐기하고 자”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록물에 대하여”를 “기록물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u>인천광역시에 시사편찬과 시정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u> 제2조(임무) <u>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u> 1. ~ 3. (생략) 4. <u>기타</u>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u>18명</u>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u>1인</u>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u>위원은</u>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간부공무원과 사	<u>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기능) <u>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 <u>----- 심의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 제3조(구성) ① ----- <u>----- 2</u> <u>5명 -----.</u> ② ----- <u>-----</u> <u>-----</u> <u>--- 1명-----.</u> ③ <u>위원은</u>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업무담당

현행	개정안
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의 해촉 사유발생으로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

현행	개정안
2. <u>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② <u>위원이 임기종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제7조(연구원) ①·② (생략) ③ <u>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u> 제10조(소위원회) ① <u>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2. <u>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u> ② ----- <u>임기종료 전에 위촉 해제된</u>----- ----- ----- <u>남은 기간</u>-----. 제7조(연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모든 사항</u>-----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u>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①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기목록,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	제12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① ----- ----- ----- -----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하같 다) 중 ----- ----- 기록물은 ----- -----. ② ----- ----- ----- 폐기하 고 자 ----- ----- -- 통지하여야 ----. ③ -----

현행	개정안
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u>기록물에 대하여</u>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에 응하여야</u> 한다.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 <u>기록물은</u> ----- ----- . ----- ----- ----- ----- <u>요청에 따라야</u> -----.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인</u> <u>정하면</u>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수가 증가하면 회의수당 증가분이 발생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강 병 수 의원